



濁流清論

제25호 2013년 5월 30일(목)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교수 해임 건 특집 나는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1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교수 해임 건 특집 학교의 명예는 무엇으로 사는가.	5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교수 해임 건 특집 그들이 왔다 - 독고 윤 교수의 해임 정계를 보고.	8
소통과 답론: 타자의 고통에 공감의 윤리감이 열릴 때. 영화< 시 >	11
교수들의 건강칼럼 : 남성 갱년기	13
소식	15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교수 해임 건 특집

지난 4월 24일 “AIMS2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된 ‘교수 해임’ 건에 관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탁류청론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학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에 해당하는 원고가 모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귀한 원고인만큼 기명으로 기고된 두 편의 원고와 익명으로 기고된 한 편의 원고를 소개합니다.

이하의 글은 ‘교수 해임’ 건과 관련하여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여 보내주신 글로, 본지의 의견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사회대 교수 · 교수회 전임 의장 강명구

2013년 4월 24일에 공고된 경영대학 독고 윤 교수의 징계에 따른 해임 결정은 예상을 뛰어 넘는 가혹한 수준이었다. 정년을 일 년 남겨둔 만 64세의 교수가 학기 중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을 이유로 해임 결정일인 2013년 4월 30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방을 비우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중간고사도 마친 학기 중에

강제로 강의를 중단시키고 연구실과 홈페이지 접근까지 막는 등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 하듯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였다. 그간의 대학본부 행동양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다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시점도 미묘하다. 징계위원회 회부는 전임 이사장 시절인 3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은 2013년 4월 18일 임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고 정작 해임결정 공고는 신임 이사장 취임 5일 후다. 전임과 후임의 절묘한 인수인계라 아니할 수 없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전제를 단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탈법이 사실관계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상이 이사장이든, 총장이든, 교수든, 직원이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상위법에 의거하여 대학 공동체가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규범에 순응해야 마땅하다. 독고 윤 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독고 윤 교수 <징계사유서>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일독하고 든 첫 번째 상념은 “나는 독고 교수의 문제제기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징계결정은 정말 아니다”였다. 비 법률전문가인 내 눈에도 즉석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나기에 지난 몇 년간 교수회를 책임졌던 당사자로서 당시의 경험에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적 견해를 요약 정리한다.

1. <징계 사유서>의 문제점

누가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독고 윤 교수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한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사유가 거론되었다. 1) 하나는 허위사실로 대학과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세부항목은 아경 장학재단이 대학에 기부한 발전기금의 처리과정과 대학 건축물 건축비 관련이다. 2) 또 다른 하나는 교수로서 본분을 어기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다. 세부 항목은 학생을 선동하고, 책임시간을 미충족하였으며, 연구를 게을리 하고, 동료교수를 음해하였다는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

1) 허위인지 아닌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지난 번 <펀드불법투자여부조사위원회>의 선례를 따르면 된다. 견해를 달리하는 양측이 동수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3자가 이를 재확인하면 몇 일만에 끝나는 일이다. 다툼 일이 아니다.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단과 본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손쉽게 해결된다. 특히 건축비 관련은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유이기에 논거가 희박하다. 일례로서 종합관의 경우, 320억 공사비에 입찰가 차액이 400만 원 수준이라면 누가 담합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2) 교수직무태만 부분은 고소자의 자의(恣意)가 엿보이는 코미디 수준의 사유다. 책임시간 3시간 미충족은 박종구 전 교수가 한 학기 내내 교육대학원에서 한 강좌도 강의를 안 한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칭찬할 일은 못되지만 연구부실에서 자유로운 보직자가 몇이나 될지도 의문이다. 동료교수 음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객관적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면 될 일이다. 유사한 사건에서 교수회는 해임요구

대신 당사자간 화해를 권유하였음을 상기시킨다.

2.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문제점

법인 이사 3인과 아주대 교수 4인 도합 7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2013년 4월 15일 대학본부가 보낸 <징계사유서>에 근거하여 피징계 대상자인 독고 윤 교수의 해명을 듣고 3일 후인 2013년 4월 18일 독고 윤 교수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서를 의결하고 첨부로 징계 이유를 담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채택하였다. 징계위원회가 독고 윤 교수를 해임하기로 채택한 이유는 세 가지다. 1) 아경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를 왜곡, 유포하여 아주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과 2) 학생을 선동하여 문제를 야기하였고 3) 온라인 과정 강의 관련하여 동료 교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았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

1) 교수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건축비 관련 및 연구부문 관련하여 징계사유를 거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2) 징계사유 3건은 위에서 제시한 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검토하면 될 사안들이다. 아경장학재단 건은 기존의 법률적 판단을, 그리고 학생 선동 건은 선동 받았다고 의심되는 학생들의 견해를, 동료교수 비방 건은 사실관계 확인 후 교수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참고하면 될 일이다.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드러난 본부의 의사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우려를 불러 일으킬 공산이 크다.

3. 더욱 우려되는 사안들

1) 형평성의 문제 : 잘못이 있으면 사실관계의 확인과 토의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판단에 있어 형평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보다 대학의 존재이유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인 표절이라든가 회계왜곡 등에 대하여 그간 대학당국이 보여준 유야무야식 태도에 비하면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걱정하고 의도한 자의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막대한 교비를 불법적으로 운용하고 수 십 억을 잃어도 보직교수 중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교과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당시 법인의 감사는 오히려 새로이 법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명명백백한 표절도 대충 넘어갔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하지만 심각하다.

2) 교수사회의 자기검열 가능성: 대학사회는 자유로운 지식공동체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대학구성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과 위축은 심대하다. 합리적 의심 하에 문제를 제기하면 평생직장을 위협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독고 교수는 독특한 사람이고 악의에 가득 찬 싸움꾼’이라는 낙인을 찍어 본부는 이번 사안의 예외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선의를 믿으라.’고 하겠지만 징계 당사자의 발언들은 시간과 함께 소멸하고 문서로 남은 기록화된 전례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악용의 소지가 충분하다. 스스로 알아서 비판을 자제할 때 아주대학은 예방주사 없이 질병에 노출될 것이다. 장기적 피해자는 결국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침묵하는 다수일 것이다.

3) 우려되는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징계 건이 피징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될 경우, 많은 경우 그러하였듯 만약에 대학이 패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징계 당사자들은 보직이 변경되고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법률비용은 모두 당사자의 급여가 아닌 대학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이 상례이다.

‘아니면 말고’ 라던가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는 식의 편의주의에 기초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만일 법률쟁송의 불편함을 이용하여 재임기간이 일 년 남짓한 피징계자의 항의를 잠재울 목적으로(즉, 법원 제소시 패소 확률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징계라는 불이익을 악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곧 중징계의 대상이다.

4. 그 밖의 동정적 고려 사항들

독고 윤 교수의 행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 다음 사항들은 이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동정적으로 고려할 변수다.

1) 독고 윤 교수의 본의에 상관없이 아주대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 비록 문제제기 방식에는 이의를 달 수 있겠지만 그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더 이상 표절, 자료 감추기, 회계 분식을 마음 놓고 행하기 힘든 수준으로 우리의 도덕적 그리고 제도적 수준이 격상되었다. 관행적 부패 가능성에 그는 예방주사를 놓았다.

2) 독고 윤 교수의 문제제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많은 경우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의 공개가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은 항상 문제제기자에게 불리함으로 작용하기 쉽고 마지막 호소는 거칠어지기 십상이다. 제대로 공개하고 밝혔다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개인적 소견을 밝히며 참으로 아이러니와 불편함을 느낀다. 90년대 말 김 덕중 전임 총장시절 독고 윤 교수와 나는 대척점에 서서 대학발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물론 교수회를 맡은

이후 대의원이었던 독고 윤 교수와의 대화와 논쟁을 통해 그 관계가 좀 누그러지기는 하였지만 한 때 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에 대한 징계를 소수의견으로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견 정말 아니다. 누구나 독고 윤 교수에 대한 개인적 싫고 좋음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개인적 호오(好惡)에 대학규범이라는 공공의 옷을 함부로 입히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다. 요즈음 유행하는 개그를 빌리자면 “여기(대학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독고 윤 교수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좀 더 객관적인 검증과 공동체적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 교수회 의장 재임 시 본부 보직자들과 총장에게 진언한 나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보직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독고 윤 교수만 없으면 아주 대학이 발전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대학정신입니다.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의 그른 말은 벌주고, 고깝지만 옳은 말은 가려 들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호오가 뚜렷하게 갈리는 피징계 대상자와 난마처럼 얽혀 시작과 끝이 애매한 경영대문제를 다루는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사기 쉽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간 교수회 의장으로서 겪은 경험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독고 윤 교수의 문제제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와 대학정신이 부당하게 대우 받는다면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신임 이사장과 총장은 모두 취임사에서 소통을 강조하였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학교의 명예는 무엇으로 사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1.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게시된 글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희생자에 대하여 반인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고, 글을 작성한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응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비록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명예는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이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법인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어색한 까닭이다.

언뜻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박원순(현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다. 묘한 것은 원고였는데,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박원순은 2009년 6월 23일자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개입하는 바람에 시민단체 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국정원은 박원순이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민간사찰을 하는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등 국가정보원 및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소송은 대한민국에 균열을 일으켰다. 바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에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원고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캠페인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였다. 국정원이 죽였던 대한민국의 명예가 다시 살아났다. 국정원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를 참칭한 꼴이 되었다.

르포르는 비인격적 권력의 등장을 근대 국가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어떤 통치자도 권력을 전유할 수도 체화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빈 공간의 출현과 정치적 자유의 제도화가 결합함으로써 누구의 권력도 아닌 민주주의적 권력이 탄생한다.

그러나 전체주의 권력은 하나의 권위로 권력을 집중하고, 지시의 통제 속에서 모든 활동이 부과되고, 다르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거하면서 개인과 집단을 통제한다. 파시즘은 개인을 유무형의 폭력으로써 국가에 합체시킨다. 국가의 언저리라도 비판하면 그것이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협박한다. 국가는 공무원들과 협력자들을 빨판으로 하여 국가기관들과 관변조직들을 축수로 하는 거대한 괴물이다. 빨판과 축수가 곧 국가이므로 국가를 비판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오직 ‘~ 나으리’들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이 살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이 열린다.

2.

어느 날 아주대학교 ‘학생준칙’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나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 사유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무기정학 사유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금품 등을 갈취한 경우, 학교 비품 또는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다. 퇴학 사유로는 흥기를 사용하여 상해 행위를 한 경우, 불미스런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등이다.

퇴학 사유 중 눈에 띄는 것이 “불미스런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이다. 어떤 행위가 “불미스런 행위”일까? 다른 사유를 고려하면 그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무엇이다. 학교의 명예는 또 무엇일까? 학생 개인의 행동이 학교의 사회적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작년 신문기사가 눈에 밟힌다. 몇 가지 주장이 겹쳐서 지금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요지는 아주대가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학생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도내용을 모아보면, 대학원 비리 의혹에 대하여 유인물과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 상벌위원회의 회의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 보복성 징계라는 것 등이다. 학교 측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학 처분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예컨대 연합뉴스 2012. 10. 2; 세계일보 2012. 10. 5).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모양인데, 어쨌든 학생에게는 정학 처분이 내려졌을 터이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이 학교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 관련 규정은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다른 면에서 심각하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68조는 징계 사유로서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규정할 뿐 징계의 종류에 따라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교원인사규정’ 제27조도 마찬가지이다. 징계사유를 조금 더 구체화할 뿐이다. 즉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학교에 제출한 이력사항 중 중요사항이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때 등이다.

징계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정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징계에 해당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법치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다. 무조건적 신뢰를 강요하는 것은 자의적 ‘권력’을 낳기 마련이다.

다시 눈에 도드라지는 것은 “교내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이다. 아주대학교의 명예는 무엇일까? 그것과 아주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의 명예는 같은 것인가? 명예 손상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학교를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한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교구성원 중 한 사람이 행한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학교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학교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문이 있으면 공론의 장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의무가 아닐까?

학교의 불법 펀드투자 때문에 아주대학교에 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때 학교의 명예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쉬쉬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살리는 길일까 아니면 그것을 손상시키는 일일까? 당연히 구성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명예를 살리는 응급조치는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게 하는 것이다. 혹여 그릇된 정보에 의해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다면, 공론의 장에서 이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해소할 일이다.

그런데 ‘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아주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가 해임되었다. 재임용과 승진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점점 높아지는 필요조건에 더해 보이지 않는 사후조건까지 채워야 하는 시대이다. 정년 보장 계약을 맺어도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또는 그저 침묵하면서 순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사명과 그 생명줄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다고 믿는다. 나지막히 소리 내어 용기를 내어 말해본다.

“학교의 비리 의혹에 대하여 입을 연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일에서 내 이름과 내 명예는 빼주십시오. 설령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공연히 악의적인 의도를 내세우지 않는 한, 나의 이름과 명예는 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가진다면, 아주대학교의 명예는 바로 이 순간 절체절명의 위험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명예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도 입을 열어

아주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광장에서 외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왔다 - 독고 윤 교수의 해임 징계를 보고

익명기고

독고 윤 교수를 해임한다는 징계 결과가 공지된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드디어 우리 대학에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징계라는 외견 상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내모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무릇 징계란 누가 보아도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과오의 정도에 상응하게 내려질 때만이 정당성을 갖는 법이다. 정년보장(tenured) 교수라 하더라도 횡령이나 성폭력 등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허나 이번 경우는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징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독고 윤 교수가 주장한 경영대 문제들과 관련하여 아직 사실 관계에 대해 시비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리도 조급하게 징계를 강행하고 극단적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대치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의견이 다르다면 더 치열하게 논쟁하면 될 일이다.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방법과 정도’에서 지나침이 있다 해서 해임한 것은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정년보장 교수조차도 ‘주장과 발언’ 때문에 해임될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두려움 없이 비판적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 파렴치범이 아닌 정년보장 교수의 해임은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염원이던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실제 아주대학에서 생긴 것이다. 어쩌다 우리 대학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해임 결정의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 첫째가 ‘건축비 문제’이고 둘째는 ‘연구업적과 책임시수 문제’이며 셋째는 ‘경영대 내부 문제’이다. 이 중 ‘건축비 문제’와 ‘연구업적과 책임시수 문제’는 징계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단서 ‘연구업적과 책임시수 문제’가 징계의 수준을 해임으로 결정하는데 참고 되었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비 문제’까지도 징계요청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징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기에 ‘건축비 문제’는 대학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교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건축비 문제’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면 이를 계기로 ‘건축비 문제’를 세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한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징계위원들에게는 징계대상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업적과 책임시수 문제’는 직접 징계의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를 참고하여 해임을 결정하였다는 의아할 따름이다. 이 역시 징계대상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징계요청서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교수라면 마땅히 교육과 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고윤 교수가 아무리 이전에 우수한 학문적 업적을 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연구업적이

없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시수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와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임의 사유(징계의 사유는 아니지만 해임 결정을 내리는데 참조하였다니 하는 말이다)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 솔직해 지자. 과연 현 보직자들 중에 지난 10년간 내세울만한 연구업적을 쌓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6~7년 전까지 연구업적이 있으면 면책이 되는가? 몇 년간 연구업적을 거론하는 것은 ‘경영대 내부 문제’의 경우에는 분쟁의 쌍방이 있고 서로의 의견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독고 윤 교수만 징계했다는 면에서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독고 윤 교수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법과 정도’에서 지나침이 있다고 해서 해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분쟁중인 경영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거중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대학본부도 비판의 대상이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방의 과오는 그대로 덮고, 다른 일방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방식의 진영 논리로는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정년을 불과 일 년 남긴 교수를 과연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내몰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아주대학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수를 이렇게 내치는 모습에서 기력이 빠진 늙은 사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 떼가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한창 때의 사자가 위협하고 군림하는 존재였을 때는 침묵하거나 굴종하던 하이에나들이 이제 와서

으르렁대는 모습이 그리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과 연구에 자신의 경력을 다 바친 노교수에 대한 말년의 평가는 학문적 생애 전체에 근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징계는 오히려 학문적 성과의 증거물이 보이지 않는 경력의 후반부만 따로 떼어, 이를 해임이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온당하지 못하다. 교수에게 해임이란 대학에서 쫓겨나는 극형이다. 이런 극단적 형벌을 내리기 전에 더 신중한 고려가 있었어야만 한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노교수에게 학자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대학에서 내몰린 교수는 대학구성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 혹시라도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해임이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독고 윤 교수가 그 동안 해 온 주장에 대해 동의 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과 생각’ 때문에 해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에블린 홀(Evelyn Beatrice Hall)이라는 영국 작가가 쓴 『볼테르의 친구들(The Friends of Voltaire, 1906)』이라는 책에 나온다는 볼테르의 유명한 문장인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된다. 아주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사유라면, 이야 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한 교수의 경력을 무난히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기관의 명예라는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체도 불분명한 기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 개인을 내친다는

것은, 국가주의가 횡행하던 옛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이번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동료 교수 몇 분이 반복적으로 인용한 것이 ‘그들이 왔다 (THEY CAME FIRST)’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마르틴 뉘멜러 (Martin Niemöller)의 시이다.

아마도 같은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억압은 마음속에 심어진 두려움의 씨앗 하나로부터 생기는 법이다. 이번 일이 아주대학 내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말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하는 자유로운 정신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에게도 찾아 올 것이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나찌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ich war ja kein Kommunist.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잠자코 있었다.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habe ich nicht protestiert;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Als sie die Juden holten,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ich war ja kein Jude.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Als sie mich holten,

그들이 내게 왔을 때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아무도 항의해 줄 이가 남아있지 않았다.

타자의 고통에 공감의 윤리감성이 열릴 때.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영화< 시 >¹⁾

인문대학 영문과 정경훈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중심주의, 이익 추구의 신성화, 무한 경쟁, 성공 제일주의로 대표되는 천민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중병을 앓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기보다는 타자배제적 자기중심주의로 서로 싸우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회의 그늘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예술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0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는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문명의 질곡을 다루고 있다.

<시>의 주인공 미자(윤정희 분)은 한강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어느 지방도시에서 이혼한 딸이 맡긴 손자 종욱과 함께 살아가는 60대 중반 여자이다. 그녀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간병 일을 하며 생활하지만 화사한 의상과 꽃 장식 모자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이다. 허름한 살림살이에 치매 증상도 갖고 있지만 큰 불평 없이 자족하며 산다. 그녀는 병원에 갔다가 응급실 앞에서 어린 딸의 죽음으로 오열하는 희진의 엄마를 목격한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죽음이지만 미자는 연민을 느끼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 슈퍼마켓 주인과 종욱에게 묻지만 이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집에 오는 길에 미자는 동네 문화센터의 시강좌 포스터를 보게 된다.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하고 이상한 소리를 잘하여 시인기질이 있다고 말하는 그녀는 시 수업에서 한 달 후에 시 한편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는다. 그녀는 시상(詩想)을 찾기 위해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의 것들에 새롭게 관심을 주며 떠오르는 글귀를 수첩에 메모한다. 그러나 미자의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은 희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남학생들의 성폭행이었고, 자신의 분신인 종욱이 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깨져버린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죽은 여학생은 안 되었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며 성폭행 사실을 학교와 경찰의 협조 아래 행동통일해서 비밀로 불리고 위자료를 모아 피해자 엄마에게 전달하여 무마하자고 결의한다. 이들이 합리적 담합을 하는 동안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의 꽃을 보고 메모를 한다. “개념 없는 할머니”인 미자는 위자료 오백만 원을 구하러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희진이 다니던

1) 이 글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

1806964)에 실린 필자의 영화비평 칼럼 “피해자의 고통 진심으로 공감했다면... 대선 길목에서 영화 <시>를 다시 보다”를 조금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학교에 찾아가 성폭행 당한 과학실에 가서 보고, 그녀를 위한 위령미사에 가고, 그녀가 죽은 장소에 찾아가고, 그녀진의 사진을 가져와 식탁에 놓아 종욱이 보도록 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수첩에 자신의 심정을 적는다.

희진의 죽음에 공감하는 윤리적 감성이 미자에게 열려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에게 가장 귀중한 손자인 종욱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친구들과 게임하며 킬 킬 거린다. 미자는 종욱이 희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죄책감을 갖기를 바라지만, 철부지 종욱은 가해자의 부모들만큼이나 자기 보호의 세계에만 머문다. 죄책감에 지친 미자가 밤늦게 자는 종욱을 깨우며 “왜 그랬어, 왜 그랬어”라고 절규하지만 종욱은 이불 속에 몸을 숨길 뿐이다.

가해자 학부모들, 종욱 뿐만 아니라 희진의 어머니도 이익 추구의 합리적 담합에 참여한다. 그녀도 위자료를 받으며 자기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비밀로 하는데 동참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이 담합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에 “이제 이대로 다 끝난 건가요? ... 완전히?”라고 묻는 미자는 자신의 귀한 손자 종욱을 경찰에 신고한다. 희진의 고통을 엄마조차도 망각해가는 현실에서 미자는 자살하는 희진이 되어 <아네스의 노래>라는 시를 쓰고 그녀가 죽은 곳에서 투신한다.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는 미자의 윤리 감성이 <아네스의 노래>라는 예술 작품을 낳은 것이다.

<시>는 합리적 이익 추구의 세계와 그 너머 보이지 않는 감성의 세계를 대립적으로 보여준다.

가해학생 부모들, 학교당국, 경찰, 종욱, 희진의 엄마로 대표되는 세계는 상처 받은 자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는 고통이 몰고 올 회오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보호의 연대를 이루며 가짜 책임지기로 트라우마를 덮는다. 하지만 트라우마의 진정한 치유는 공감하는 감성에서 시작한다. 프랑스 현대윤리학의 거장인 레비나스는 윤리는 자아, 동일성, 합리성, 계산, 재현, 일자 존재론 이전에 타자에게 열려있는 감성이며 타자의 고통에 열린 주체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버리고 타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정신분석철학자 라캉도 희곡<안티고네>에 대해 말하면서 크레온 왕의 금지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 자기 오빠의 시신에 애도하여 죽게 되는 안티고네의 행위는 윤리적 행위이며 윤리는 즐거움을 증대하고 고통을 줄이려는 현실원칙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에 의해 조정되는 월남정부의 불교탄압과 전쟁에 저항하여 소신공양함으로써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규모 반전시위를 하게 만들고 결국 미군을 철수하게 한 베트남 스님 틱광덕의 행위는 테러, 구금, 감금, 살인에 의한 고통을 깊이 공감하여 자신을 버린 윤리적 실천이었다. 틱광덕 같은 위인은 아니지만 미자가 희진과 함께하는 것 또한 감성이 열린 사람의 윤리적 실천이다.

<시>에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미자의 윤리 감성은 시 짓기로 대표되는 예술 감성과 하나가 된다. 칸트에 따르면, 예술을 낳는 상상력은 오성의 개념과 이성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간의 능력인데, 상상력이 기존의 개념과 관습과 재현을 넘어갈 때 심미적 감성이 활짝 열린다. 미자는 시상을 찾아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느끼려 하는 과정에서 길에

떨어진 살구를 베어 물다가 “살구는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 깨어지고 밟힌다/ 다음 생을 위해”라는 시상을 메모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도 살구에 대해 그런 거 처음 알았네”라며 즐거워한다.

무용한 것으로 여기며 수없이 지나쳤던 살구에 게서 새로운 것을 찾는 감성이 예술감성이요 상상력이라면, 그녀가 회진의 고통에 공감하며 몸을 던지는 것은 그녀의 고통이 눈에 밟혔기 때문인데 이것은 윤리감성이다. 이렇게 미자에게서 보듯이 예술감성은 윤리감성과 통한다. 그녀가 처음으로 쓴 시작품 <아네스의 노래>는

그녀의 진실한 윤리 감성과 고민의 산물이다. 아마도 영화<시>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대해 열린 감성을 지닌 이창동 감독의 윤리적 고민의 예술적 산물일 것이다.

우리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타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갱년기

의학부 가정의학교실 김광민

56세 남자가 약 2년 동안의 피로감, 집중력 및 기억력 감소, 의욕 및 성욕 감소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1년 전 종합검진(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빈혈, 간기능, 갑상선기능검사, 흉부 x선 촬영, 소변검사, 전해질, 혈액화학검사 등)에서 위염, 경도의 지방간 이외에는 특이소견 없었다. 환자는 2년전까지는 주변에서 일 처리를 잘한다고 평가받았으나, 2년 전부터 업무능력이 떨어졌으며, 머리가 맑지 못하고, 전신쇠약감이 있었다. 전에 질병을 앓았던 적은 없었으며, 남성호르몬 검사에서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였다. 6주 후 추적 관찰에서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없어졌으며, 의욕 및 성욕이 호전되었으며, 전신쇠약감 및

피로감이 약간 호전되었다. 4개월 후 업무 능력 및 집중력, 피로감, 전신쇠약감이 많이 호전되었다.

남성갱년기는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 일어나는 노화 현상으로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하여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신 및 심리적 상태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성은 갱년기 증상이 급격히 나타나는데 반하여, 남성은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며 개인차가 커서 본인 스스로 갱년기 증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 심리적 증상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우울감, 자신감 결여, 즐거움 결여 및

활동력 감소 등이 생기며, 신체적 증상으로 피로하며, 잠이 잘 안 오며, 식욕이 떨어지며, 관절통, 피부 위축 등이 생기며, 성적 증상으로 성욕 감소, 성 관심 감소, 발기부전 등이 생기며, 혈관 운동 증상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식은 땀이 나게 된다. 그리고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근력이 약해지며, 골밀도가 감소하며, 몸의 털이 빠지는 징후 등이 나타난다. **예전의 나와 다르게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집중력 저하와 근육 및 근력 감소로 생기는 피로, 의욕 및 성욕 감소의 증상 모두가 있는 경우 남성호르몬 검사를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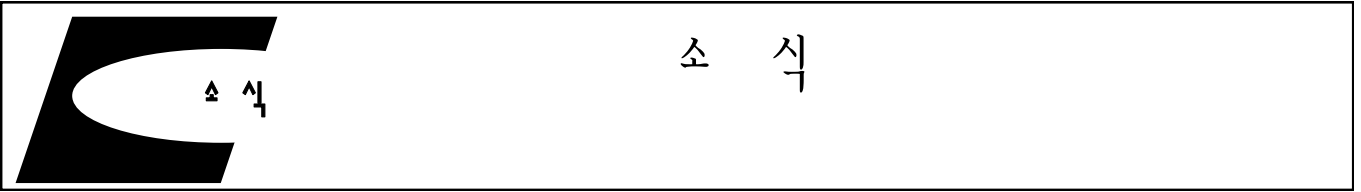
남성갱년기가 생기는 원인은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분비의 이상과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영양상태, 비만 및 만성질환(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간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며,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세 이상의 남성중에서 젊은 사람의 정상적인 혈중 남성호르몬 농도보다 낮은 경우는 약 6-12% 정도이며, 남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져 있으면서 피로, 집중력 저하, 의욕 및 성욕 저하 등의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 호르몬 보충요법으로 갱년기의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성호르몬 보충에 의해 의욕의 개선, 성욕 증가 등의 증상은 투여 1-2주 이내에 차이를 보이지만, 근육량 증가 및 근력 강화효과는 약 4개월 이상 지나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피로와 전신쇠약감은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다가 약 4개월 정도 지나야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경구용제제, 패취제제, 젤제제, 주사용제제 등이 있는데, 경구용 제제는 지용성으로 약물의 흡수시 지방이 필요하므로, 실제 효과가 식이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패취제제는 피부 가려움증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나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젤제제와 주사용제제이다. 젤제제는 하루에 한번 바르면 되며, 주사용제제는 1-2주 간격의 근육주사제제와 최근에 3개월 주기로 치료하는 제제가 개발되어 있다.

중노년기에서도 남성호르몬 보충 요법이 근육량의 증가와 근력 향상, 복부 비만을 줄여주며, 골절을 방지하는 골밀도의 증가, 성욕과 성기능에 유익하며, 빈혈 호전, 활력 증가 등을 만들 수 있다. 치료의 목표는 정상 생리적 남성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며, 남성호르몬 결핍에 따른 증상들을 없애주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예전의 내가 아니라 피곤하며, 업무 능률이 떨어지며, 의욕 및 성욕이 떨어지며,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남성호르몬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I. 이사장 면담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단(김호섭 의장, 이재호 부의장, 조광국 총무)은 2013년 4월 24일 오후 3시 새로 취임한 추호석 이사장을 접견하여 취임 축하 인사와 더불어 학교 발전을 위한 상호 소통에 관한 담화를 나누었다.

II. 교수회 분과 위원회 조직 현황

교수회 의장단은 교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위원회, 봉급위원회, 연구년위원회 등 3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조사와 연구를 계획, 수행토록 했다.

각 연구 위원회의 참여 위원은 아래와 같다.

*연구위원회 : 김상배(위원장, 정통대), 윤현철(공대), 박성진(정통대), 최상돈(자연대), 조성을(인문대), 김선교(경영대), 강주영(경영대), 이왕휘(사회대)

*봉급위원회 : 강민철(위원장, 경영대), 권순정(공대), 최정주(정통대)

*연구년위원회 : 윤원식(위원장, 정통대), 조광국(인문대), 윤성승(법전원)

III. 독고 윤 교수 징계 관련

지난 4월 30일 징계위원회가 경영대학 독고 윤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통보하자, 당사자인 독고 윤 교수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를 교수회 차원에서 공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수회는 50차 대의원회의에서 독고 윤 교수 해임 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수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1. 교수 해임 등 징계 조치는 교원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교수회는 해당 교원에 대한 선호의 판단을 떠나 교수회의 존립근거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한다.
2. 교수회는 교수들의 기본적 교권을 침해하는 징계 조치 발생 시, 적절한 조사를 통해 해당 조치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3. 조사 결과는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대의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행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b08

전자 메일: juok@ajou.ac.kr

소식

소식

IV. 총장 건의 사항

교수회 대의원회는 50차 정기회의(5월 7일)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을 총장에게 건의드리기로 결정, 의장단(김호섭의장, 이재호부의장, 조광국총무)은 5월 9일 총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였다.

- 1) 대학 내 표현의 자유 및 자율성 확보
- 2)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제도 운영의 개선
- 3)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

총장은 교수회 시각을 큰 틀에서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다.

- 1)보직 교수 임면 시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함.
- 2) 위원회제도가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음.
- 3) 교수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교수회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곧 개선 될 것임.

교수회는 향후 이 사안이 처리 되는대로 결과를 전체 교수에게 알릴 예정이다.

V. 전체 교수 회의 안내

2013년 전체교수회는 다가오는 6월 25-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수회 규칙에 의하면 전체교수회의는 총장 또는 교수회의장이 소집할 수 있고, 교수회는 1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총장이 먼저 회의를 소집하였기에 의장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교수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다 중요하게는 전체교수회의를 보다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총장과 의장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번 전체교수회의는 총회를 겸하고, 학교 당국과 현안 과제를 직접 논하는 자리인 만큼 많이 참석하셔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소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사안이 있으면 소속 대의원을 통해 교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회 검토를 거쳐 학교 측에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 : 이재호 (편집책임)
구형건, 김상배, 김태승, 김혜선, 노명우, 정경훈.